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488
------	-----

2015. 6. 29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4월 30일, 金容錫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15.6.29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金容錫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,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,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큼.
- 그러나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되어 있

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
-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바로잡고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,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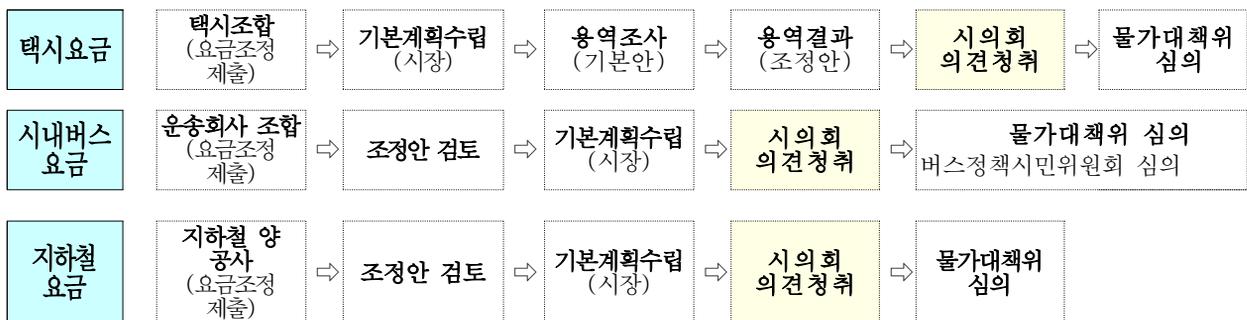
-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시의원, 물가관련 시민단체 및 소비자 대표, 물가 관련 전문가와 언론·법조인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음(참고자료 1).

-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며, 시장이 결정·관여하는 교통요금(시내버스·마을버스요금,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), 도시가스요금,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. 대중교통 요금 결정 절차와 문제점

- 현재 대중교통 요금은 해당 사업자와 관련 조합의 조정신청과 시의회의 의견청취,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음.

<그림 1> 교통요금 결정절차



-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결정 절차에서 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, 대중교통 요금이 소비자 물가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나 시민의견의 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운영적자, 과도한 재정부담 등 경

제적 이유를 근거로 시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요금이 인상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저해할 수 있음.

- 이처럼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시민의견 수렴과정인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의의가 있고 바람직함.

라. 종합의견

-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,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,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함(「행정절차법」 제2조 제6호)
 -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 제2항에서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또한 의견청취라는 기능 외에도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하게 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음
-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이

끌어 낼 수도 있음

- 따라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요금 결정시에 서민들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담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, 요금 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의견청취) ① <u>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10조(의견청취) ① <u>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